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을 법정 기념일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 1.)로부터 일주일간으로 변경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을 개선하여 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 상 여성의 날, 양성평등 주간, 여권통문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로 인해 오히려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현행 양성평등주간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 (안 제23조제1항)

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제1항제4호)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9월 1일부터 9월 7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별표 2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별표 2 제2호가목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표에 위반행위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실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영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기준 미운영 실적이 6개월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하

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미운영실적이 1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u>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u> 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 ----- <u>9월 1일부터 9월 7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u>1년</u>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1. ----- <u>6개월</u>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149